

재판부		재판장	허	부
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(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용)				
사건번호 및 죄명				
피고인	성명	<input type="checkbox"/> 구속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구속		
	주거			
【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】				
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.				
【필요적 변호】				
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.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성년자인 때 <input type="checkbox"/> 70세 이상의 자인 때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아자인 때 <input type="checkbox"/>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정형이 사형·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·금고에 해당하는 때				
【임의적 변호】				
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피고인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.				

뒷 면 에 계 속 됩 니 다.

【국선변호인 선택】

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들 중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‘전속변호인’ 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.

※ 재판부별 전속변호인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.

만일 재판부에 전속된 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경우는 ‘기타’ 난에 그 변호인의 성명, 연락처 등을 적기 바랍니다.

※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	성 명	주 소	전화번호	비고
전속변호인				
기타				

위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.

. . .

피고인의

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<해당란에 표시>

(이 름)

Ⓜ (또는 서명)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

☞ 참고 사항

1. 이 양식의 짙은 색 부분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.
2. 피고인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송부받은 양식을 사용하고, 특히 구속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교도소, 구치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.